



한국계 Maquiladora 를 위한 Executive Summary¹ on May 29, 2004

2004 년 멕시코 세법개정

200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은 과거와 달리 소폭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행정적인 면을 손질하는데 그쳐서 IVA tax, 에너지, 노동문제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Fox 행정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² 그 개정 내용 중 참고될 만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 (1) 2004 년 세율: 33%. (2005 년: 32%)
- (2) 급여보조금(Credito al Salario)에 대한 payroll tax 4%가 폐지 되었다. 이 조항이 시행되었던 2002 년과 2003 년에 소송(정지명령:Amparo)을 제기한 기업들만 과거 지급분에 대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3) 2004 년 7 월 1 일부터 연방세금은 (제 3 자에게서 원청징수 한 세금을 포함하여) 같은 세무당국이 관리하는 한 상계처리("Compensacion")가 가능하다.
- (4) 모든 회계기록은 최소한 5 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5) 회계감사보고서는 익년 5 월 31 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시에 발견된 잘못된 세무보고는 감사보고서 제출후 10 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6) 세무조사는 1 년이내에 마쳐야 하며 6 개월에 한하여 1 회 연장할 수 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2 년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연장이 않된다.
- (7)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은 자진신고의 경우 40%이고 적발된 경우는 50-100%까지 부과한다. 납세자가 손실을 과대 신고하였으나 실제적으로 해당 손실을 세금감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2003 년도 개정세법 중 2004 년부터 시행되는 조항은 10% 종업원 이익분배(Employee profit sharing)의 40%를 세후항목(After tax account)이 아닌 비용항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 감면효과를 주고 있습니다³.

¹ 본 Summary 는 Choi, Kim & Park 회계법인이 한국계 마킬라도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것이며 이는 저희의 법률적인 해석이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중대한 의사 결정 시에는 각자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² 지난해 7 월 하원선거에서 야당인 PRI 에게 과반 의석을 빼앗긴 후 상하원은 물론 사실상의 국정 장악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³ 2005 년과 이후년도에는 80%를 비용항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Customs Law) 개정

금년 1월 1일부로 세법개정과 동시에 관세법 개정이 있었으며 일부 조항을 정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 (1) 밀수(Contraband) 규정 강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한다.
 - 외국물품이 세관신고서류가 없이 멕시코내에 있는 경우
 - 임시수입이 마킬라도라 허가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 임시수입된 물품이 다른 마킬라도라 등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 임시수입된 물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재수출하지 않은 경우
- (2) 밀수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는데 포탈 관세금액에 따라 3개월에서 9년까지의 징역형에, 또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3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수입물품의 세관 신고금액을 실제가격의 70%이내로 줄여 신고한 경우에는 중대 조세범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형량표를 제시하였다.
 - 미납관세 500,000 페소 이하: 3개월에서 2년까지 징역
 - 미납관세 500,000-750,000 페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 미납관세 750,000 페소 이상: 3년에서 9년까지 징역

2003년 10월 30일자 임시세법개정

Fox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통령령을 발동하여 마킬라도라의 세금 감면안을 전격 발표하였는데 이는 멕시코를 떠나거나⁴ 또는 중국 등 다른나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임시 방안으로 취해진 것이며 2003년의 2개월간 그리고 2004년도에만 한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 감면액은 다음의 3 step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이전가격연구의 Option 을 선택한 기업도 같습니다.

- (1) Safe Harbor 방식 (6.9%의 총자산 금액이나 6.5%의 총비용) 중 높은 금액을 계산한다.
- (2) Safe Harbor 계산방법으로 3%의 총자산 또는 3%의 총비용중 높은 금액을 계산한다.
- (3) 상기(1)항에서 (2)항은 뺀 금액이 세금 감면액이다. 다만 2003년은 세법개정일부턴년말까지의 약 2개월간만 해당된다.

이 조항에 의한 세금감면은 200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차후년도로 연장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2004년에 약 50%이상의 감세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소득(Taxable income)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므로 Profit Sharing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⁴ 과거 3년동안 500여개의 마킬라도라가 문을 닫았고 약 200,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전가격에 대한 Update

2003 년 1 월 대폭적인 세법개정 이후 특별한 변화는 없으나 2003 년 11 월부로 이전가격을 총괄하는 SAT 의 수장이 전격 경질되었습니다. 새로운 수장은 Mr. Roberto Schatan 인데 경제학자로서 OECD 의 멕시코 대표를 지낸, 이론이 강한 사람입니다. 과거 APA (사전 가격협약)를 의무적으로 할 때와 달리 2003 년부터 마킬라도라가 자체적으로 이전가격 연구를 하여 과세소득을 정하게 되므로 이전가격에 대한 감사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Mr. Schatan 은 올해부터 이전가격 감사를 대폭 늘리겠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지만 약 300 여 Case 에 달하는 과거년도들에 대한 밀려 있는 APA 를 처리해야 하고 또한 지난해 말을 즈음하여 적지않은 인력들이 멕시코 회계법인들로 자리를 옮김으로 인한 공백을 매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듯 합니다.

멕시코 회계법인들에 따르면 이전가격연구 결과 약 3%-5%의 Mark-up 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며 상기에 설명한 임시 세금감면액을 감안하면 2004 년도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마킬라도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Safe Harbor Option 을 선택한 마킬라도라도 이전가격 Option 으로 전환 할지에 대하여 다시 득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 (1) 2004 년 Inflation 목표: 3%. (2003 년은 3%를 조금 넘었으나 2004 년은 실질적으로 4-5%가 될 것으로 예상)
- (2) 2004 년 환율 전망: \$11.10-\$11.50 페소 (2003 년: \$10.70-\$10.90 페소)
- (3) 2004 년 경제성장: 4.3% GDP 성장 (미국: 3.7%, 캐나다 3.0% 예상)
- (4) 봉제업 마킬라도라는 면세혜택이 캐나다 수출도 포함되도록 확대 되었다.
- (5)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던 조항이 폐지 되었다.
- (6) Foreign Trade Operation Report 를 매년 4 월 말까지 SECON 과 Hacienda 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가 5 월말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마킬라도라 Program 이 정지되고 6 월말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Permit 이 취소 (cancel) 된다. 취소되는 경우에는 5 년내로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본 Executive Summary 에 의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Choi, Kim & Park 회계법인 (전화 (858)560-5200 이나 Email: hoonkim@ckpacpas.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끝.

한국계 Maquiladora 를 위한 Executive Summary⁵
on August 29, 2003

2003 년 멕시코 세법개정

200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개정세법은 마킬라도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여러 규정들이 들어 있는데 멕시코 국회가 사전에 세무당국과 협의없이 전격적으로 개정한 이전가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중 이전가격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참고가 될 사항만을 정리하였습니다.

- (1) 2003 년 세율: 34%. (2004 년: 33%, 2005 년: 32%)
- (2) 종업원 이익분배(Employee profit sharing): 10% Profit sharing 이 비용항목이 아닌 세후항목(After tax account)으로 분류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늘린 불합리를 시정하겠다는 의도이지만 2003 년도에는 적용되지 않고 2004 년에 40%, 2005 년과 이후년도에는 80%를 비용항목으로 산입하도록 하였다.
- (3) 급여보조금(Credito al Salario)에 대한 payroll tax rate: 지난해 3%에서 4%로 늘어났다. 이 조항이 처음 나온 2002 년도에 많은 마킬라도라가 소송(정지명령:Amparo)을 제기하였고 금년 5 월 13 일 멕시코 대법원이 당해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시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나 Hacienda 가 일부 문제된 규정을 손질하였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세율을 올려서 많은 기업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변호사들은 2003 년 본 규정도 위헌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Hacienda 는 나름대로 문제 규정을 손질하였다고 맞서고 있다.
- (4) Submaquiladora 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IVA) tax rate 이 0% 로 확정되었으며, Conference 등을 이유로 멕시코 방문중인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Hotel, Rent car 등에 대한 IVA tax 도 0%를 적용. IVA tax 보고 기한이 Monthly 로 바뀌었으며 한국과 같이 Cashflow 개념을 도입, 해당 월중 대차의 차이만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였다.
- (5) 은행을 통하여 결제된 수표도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되는데 (2002 년 개정세법) 수표를 발행한 날로부터 4 개월내에 은행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6) 식당에서 사용한 식비등에 대한 비용공제율을 종전 50%에서 25%로 변경하였다.
- (7) Royalty 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로 확정하였다. 종전에는 해석의 차이에 따라 0%를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문제된 조항을 정리하였다.

⁵ 본 Summary 는 Choi, Kim & Park 회계법인이 한국계 마킬라도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것이며 이는 저희의 법률적인 해석이거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므로 중대한 의사 결정 시에는 각자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가격에 관한 법률개정

2002 년까지 Safe Harbor 조항을 선택하던지 세무당국(SAT)⁶과 사전협의(APA)를 하도록 강제하던것을 미국식으로 바꾼것이며 아직 자세한 세칙이 나오지를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마킬라도라의 조세부담을 낮출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킬라도라는 다음의 한가지를 선택 (Option)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1) 자체적으로 이전가격연구(TP Study)를 하는데 종전에 대부분의 마킬라도라에서 사용하였던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을 적용하여 이익 (Mark-up)을 결정한다. 결정된 Mark-up 에 1%의 기계장비가격을 더하여 과세 이익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기계장비 가격은 외국 모기업의 순장부가격(Net book value) 을 기준으로 한다.
- (2) 종전의 Safe Harbor 를 적용하는데 계산방식에 약간의 조정이 있음. 다음의 두가지 중 많은 금액을 과세이익으로 계상한다.
 - ① 마킬라도라 운영에 사용되는 전체 자산(모기업 소유 포함) 의 6.9%: 종전과 다른점은 고정자산의 경우 실제로 사용된 부분만 감안하는데 이는 사전에 세무당국의 별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또한 재고자산 평가는 미국회계 원칙에 따라 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계산방식에서 크게 바뀌었고 다만 중간제품품은 원자재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한다.
 - ② 마킬라도라 전체 비용의 6.5%: 종전과 다른점은 Inflation 에 따른 조정에 관련된 비용,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별손실항목 (Extraordinary or non-recurring expenses) 등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또한 2002 년과 2003 년 개정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3%, 혹은 4% Credito al Salario 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마킬라도라 운영을 위하여 모기업등에서 파견된 외국인(nonresident)의 외국급여는 실제로 멕시코에 있었던 날을 계산하여 365 일로 나눈 factor 를 적용한다. 다만 날짜계산은 주 5 일을 계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해당 주말도 포함하며 멕시코에서 보낸 휴가 등도 포함한다.

상기 두가지 Option 중 많은 금액을 과세 이익으로 하는데 2003 년과 2004 년 2 개년은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Depressed market)을 감안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한 factor 로 특별조정을 한다.

$$\text{Factor} = \text{해당년도 수출금액(U.S. dollar)} / \text{직전 3 년간의 평균 수출액}$$

- (3) 자체적으로 TP Study 를 거래영업이익 방법(Transactional Operating Profit Method) 로 하여 과세 이익을 계산한다. 이 방법은 미국의 비교이익 방법 (Comparable Profit Method)과 유사한데 마킬라도라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산(모기업 소유 포함)의 가치를 감안함으로써 2001 년 10 월 미국세청(IRS)과 협의를 한 총 자산수익 방법이 혼합 되어있다. 상기 (1)항 Option 에 있는 1% 기계장비의 순장부가액은 이 Option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의한 Option 선택은 다음년도 3 월말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⁶ SAT 는 멕시코 세무당국(Hacienda)에 소속되어 있는 국제기업 담당 세무국을 일컫습니다.

해설

이전가격에 관한 법률개정은 마킬라도라 Industry 의 멕시코 이탈을 우려한 Tijuana 지역 연방 하원의원이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안에 따르면 이에 대한 시행세칙(Regulation)을 2003년 8월 1일까지 확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Safe Harbor 를 선택한 중소기업 마킬라도라를 제외하면 상기 (3) 보다는 (1) 의 Option 이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⁷ 종전 규정과 크게 다른 점은 2002년까지 강제적으로 SAT와의 사전협의(APA)를 거치도록 했지만 2003년부터는 APA가 임의사항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3년단위의 APA를 하였지만 개정세법에는 매년 TP Study를 하도록 함으로서 멕시코회계법인등 전문가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며 2003년도에 해당하는 TP Study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멕시코 회계법인들이 Proposal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자세한 세칙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기한(내년 3월말)도 여유가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SAT의 최고책임자인 Mr. Gabriel Oliver에 의하면⁸ 금번 세법개정으로 SAT에서는 세무감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으며 TP Study 자체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미달 전문가(Unqualified Specialist)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였으며 자체적으로 TP Study를 한 결과에 대한 멕시코 세무당국, 특히 SAT와의 마찰 등 불확실한 상태를 가져 가지 말고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종전과 같이 SAT와 사전협의(APA)를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도 APA를 하는 경우 최소 2005년까지 3년 단위로 하게 되므로 조세 부담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는 경우 매년 해야 되는 TP Study에 대한 전문가 수수료, 그리고 SAT의 감사시 지출해야 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3년 단위의 APA가 확실성 면에서나 비용면에서나 더 나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멕시코 세금보고의 소멸시효는 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어떠한 Option이든 종전보다는 마킬라도라의 조세부담을 줄여야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으며 특히 Safe Harbor Option을 선택한 마킬라도라는 개정된 내용에 따라 세금을 계산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치 않는 자산은 과세이익 계산시 감안한다는 조항(종전은 마킬라도라 첫해에만 적용)이나 과거 3년 평균에 비하여 당해년도 수출액이 줄어든 마킬라도라는 해당 감소율 만큼 조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조항은 새로운 것 일 뿐만 아니라 세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당국의 허가를 득하는 등 준비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마킬라도라 조례 (Maquiladora Decree) 개정

The Ministry of Economy (SECON: 종전의 SECOFI)에서는 금년 5월 12일자로 대폭적인 마킬라도라 조례 개정을 하였으며 이중 한국계 마킬라도라에 영향을 미칠 조항을 정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⁷ BNA report, Volume 11, Number 19, February 5, 2003

⁸ 지난 5월 Mexico City에 있는 SAT Headquarter에서 저희 회계법인과 Meeting을 가졌음

- (1) 여러 형태의 마킬라도라에 대한 명칭 변경 및 기준 변경: 종전 대부분의 마킬라도라가 해당되던 “Export Maquiladora”를 “Industrial Maquiladora”로 변경하였고 “Service Maquiladora”에 포함되던 업종 중 일부를 삭제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한국계 “Service Maquiladora”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함. Submaquiladora 나 PROSEC 에 관하여도 일부 Definition 을 정리하였다.
- (2) 새로 Maquiladora 를 설립하는 경우 기준과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처리기한이 종전 10 영업일에서 20 영업일로 바뀌었다.
- (3) 종전에는 마킬라도라 설립후 첫 수입신청시에만 책상 의자등 가구와 Computer 관련 기기등을 수입할 수 있었는데 개정세법은 이를 폐지하여 어느 것점이든 가능하다.
- (4) 봉제업 마킬라도라는 미국외에서 원단을 구입한 경우 미국에서 Cutting 을 완료해야 관세 면제가 가능 했는데 이제는 멕시코에서 Cutting 을 하는 경우에도 관세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 (5) Spare parts 에 대하여도 관세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Spare parts 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리된 물품(Repaired goods) 만 관세면제가 가능했다.
- (6) 마킬라도라 (또는 PITEX) 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규모에 관련 없이 매년 (조세목적상) 회계감사(Audit on Financial Statements)를 해야 한다. 종전에는 일정규모 이상만 의무하던 회계감사를 전 마킬라도라로 확대했다.
 - ②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최소한 3일전에 SECON 과 Hacienda 에 신고해야 한다.
 - ③ Foreign Trade Operation Report 를 매년 4월 말까지 SECON 과 Hacienda 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가 5월말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마킬라도라 Program 이 정지되고 6월말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Permit 이 취소 (cancel) 된다. 취소되는 경우에는 5년내로 재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임시로 수입된 물품은 신고된 주소지에 있어야 한다.
- (7) 다음 경우에는 마킬라도라 Permit 이 취소된다.
 - ① Maquiladora Decree 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② 기 승인된 Maquiladora permit 내용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 ③ 마킬라도라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취소 되면 60 일 이내로 모든 자산을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

해설

전문가들은 상기 조례 변경을 당근과 채찍에 비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마킬라도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규모에 관련없이 모든 마킬라도라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당연한 결과가 되며 모든 규정에 하나라도 저촉이 되면 SECON 의 직권에 의하여 즉시 Permit 이 취소되어 막대한 손실을 안고 사업을 포기해야 할 위험도 있습니다.

관세법(Customs Law) 개정

금년 1월 1일부 세법개정과 동시에 관세법 개정이 있었으며 일부 조항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 (1) “Scrap”의 정의 확대: Package materials and any broken, worn out, obsolete, or useless materials 를 포함.
- (2) Document 제출의무 강화: 선하증권, 송장, 원산지 증명등 통관시 제출서류 확대.
- (3) 임시수입(Temporary importation)된 기계장비, tools, molds, spare parts 등의 멕시코내 체류기한을 종전 5년또는 법정내용년수내로 제한하던 것을 마킬라도라 Program 기한내로 변경함으로 사실상 제한을 없었다.
- (4) 적절한 수입증빙서류 (proper import documentation)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밀수로 간주하여 각종 벌금을 부과한다.
- (5) 모든 수입자(마킬라도라)는 재고자산관리를 자동화(Automated inventory control system)하여야 한다.

해설

본 관세법개정이 발표되면서 일부 멕시코 변호사들은 세관원들에 의한 직권남용을 우려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실제로 상기 (4)항을 경직적으로 또는 확대해석한 세관원들의 직권남용 또는 부패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입통관서류와 실제 기계장비 또는 자재들을 대조하여 한자라도 틀린 점이 발견되면 밀수품으로 간주하여 최소 수십만불에 이르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한국계 업체를 target 으로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본 Executive Summary 에 의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Choi, Kim & Park 회계법인 (전화 (858)560-5200 이나 Email: hoonkim@ckpcpas.com)으로 알려 주십시오. 끝.